

2023년도 문화재위원회

**제10차 순채분화재분과위원회 회의자료**

- 일 시 : 2023. 10. 24.(화) 14:00 ~ 16:05
- 장 소 : 정부대전청사 1동 906호(대회의실)
- 출석위원 : 김기수(위원장), 강동진, 김상남, 목수현,  
이광표, 이상희, 이혜은 (이상 7명)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문 화 재 위 원 회**

## □ 고지사항

1.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10조에 따라,
  -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법인의 상근·비상근 임직원 포함)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며,
  - 위원께서는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합니다.
  -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에는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12조 제5호에 따라 해촉 됨을 알려드립니다.
2. 또한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아울러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9조 및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7조에 따라 의결 방식은 분과위원장이 거수 또는 기명 투표 중에 선택하여야 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4.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회의내용은 기록·녹취되며 회의 결과는 공개됨을 알려드립니다.

## 근대문화재분과 제10차 회의 안건 목록

### 【심의사항】

1	국가등록문화재 「대전 충청남도청 구 본관」 현상변경(2차)	(공 개)
2	사적 「환구단」 현상변경	(공 개)

### 【검토사항】

3	사적 「서울 구 러시아공사관」 설계변경(안) 검토	(공 개)
4	「에비슨 부부 전별첩」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공 개)
5	국가등록문화재 「영덕 영해장터거리 근대역사문화공간」 등록구역 조정 검토	(공 개)

---

# 심 의 사 항

---

## 1. 국가등록문화재 「대전 충청남도청 구 본관」 현상변경(2차)

### 가. 제안사항

대전광역시 중구 소재 국가등록문화재 「대전 충청남도청 구 본관」 등록구역 일부 철거 및 외관을 변경하고자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대전 충청남도청 구 본관」 등록구역 일부 철거 및 외관을 변경하고자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이 문화유산 보존·관리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 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23년 제6차 근대문화재분과 위원회 심의('23. 6. 27.) : **부결**
- 국가등록문화재의 기본적인 양식, 구조 및 특성 훼손이 우려됨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국립현대미술관
-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등록문화재 「대전 충청남도청 구 본관」('02.5.31. 등록)
  - 소재지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01 (선화동)
- (3) 세부내용
  - 대상위치 : 해당 문화유산
  - 신청내용 : 일부 철거 및 외관 변경
    - 일부 철거
      - 1960년 이후 증축된 건축물 철거
      - 1932년 건립 구역 건축물 일부 철거
    - 외관 변경
      - 외벽면에 접하여 건축물 수평증축
      - 3층부 전체 철거 후 건축물 수직증축(디자인 동일, 지붕재료 변경)
      - 좌·우측 연결통로 철거 후 실내연못 및 성큰(sunken) 조성
      - 형태 변형된 창호 교체 등 입면 복원
    - 기타
      - 내진보강 : 전단벽 설치, 외벽 안쪽 편 설치, 마이크로 파일 설치 등
      - 지하층 설치를 위한 흙막이 공사

## 라. 참고사항

- 제6차 위원회 현지조사 의견('23.6.16.): 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 국립미술품수장보존센터로 추진 중인 국가등록문화재 제18호 충청남도청 구 본관은 단순 지방 행정업무시설이 아닌, 대전을 비롯한 충남지역 행정적 기능에 확장과 시대적 변화에 따른 다양한 역사적·건축적 가치가 내재된 문화유산임.
- 충청남도청 구 본관은 해방 이후에도 근·현대사의 중요한 역사적 사건들이 있어 왔으며, 점차 확대되는 충남도 행정업무를 위해 현재 3층 부분이 계획되면서, 단순한 물리적 공간에 증가뿐만 아니라 지역발전과 시대변화를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그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되면서 알려진 현재의 문화재 경관과 이미지는 지역사회에서 상징성과 장소성, 시대성을 대표하는 중요한 문화재로 인식되고 있음.
- 구 본관의 3층은 1960년 증축공사로 현재 모습이 갖춰진 것으로, 금번 국립미술품수장보존센터 계획안에서 제시된 문화재 원형 복원 및 미래를 지향하는 이미지 구현을 위해 증축부가 철거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에 제안은 문화재가 갖는 역사적·건축적 의미에 연속선상에서 볼 때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 제시된 계획안이 실현될 경우 문화재 등록 부분이 아니어도 문화재 위에 직접 연결되는 수직 증축부의 파사드에 의한 형태적 변형은 기존 문화재 입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문화재 경관에 있어서도 이질감이 커질 것이 우려됨. 따라서 문화재의 파사드 변형을 최소화하고, 옛 충청도청사의 지역성 및 정체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계획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음.
- 구조적 측면에서 3층에 적용되는 구조보강 방안은 구 충청도청사의 기존 내부공간에 간섭을 수반하는 보강 방법이 될 수 있으며, 문화재의 배면(중정부) 출입구 주변에 수직동선 확보를 위해 계획되는 증축부분에 지하터파기 시 문화재 변형이나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구조적 검토와 보강방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

## 바. 의결사항

### ○ 보류

-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세부사항 조정 후 재심의
- 구성위원: ○○○, ○○○, ○○○, ○○○, ○○○

### ○ 출석 7명 / 보류 7명

## 2. 사적 「환구단」 현상변경

###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중구 소재 사적 「환구단」 지정구역 내에서 지하층 연결 엘리베이터를 증설하고자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환구단」 지정구역 내에서 지하층 연결 엘리베이터를 증설하고자 하는 계획이 문화유산 보존·관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사적 「환구단」('67.7.15. 지정)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동 87-14
- (3) 세부내용
  - 신청위치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동 87-14
    - ※ 문화유산 지정구역 내
  - 세부내용 : 지하층 연결 엘리베이터 증설
    - 계단실 면적: 기존 35.69㎡ → 변경 후 47.07㎡ (11.38㎡ 증가)
    - 증축부 규모: 지상 4.3m, 지하 18.75m (5개 층)
    - 지상 노출부 마감 : 강화접합유리

### 라. 전문가 현지조사 의견('23.10.20.) : 문화재위원 ○○○·○○○

- 사적 제157호인 환구단(圓丘壇) 주변 숙박시설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층으로 연결되는 엘리베이터 추가 설치에 따른 현상변경 건임.
- 기존 주차시설 규모에 비해 이동편의시설에 부족함은 있으나, 엘리베이터 설치 위치가 국가지정문화재 구역 내 위치하고 있으며, 문화재 보호 여건 및 경관 등에 변화를 수반할 수 있어 신청 사업은 부적합하다고 사료됨.

### 마.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 지정구역 내로 문화재 보호 및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큼
- 출석 7명 / 부결 7명

---

# 검 토 사 항

---

### 3. 사적 「서울 구 러시아공사관」 설계변경(안) 검토

####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중구 소재 사적 「서울 구 러시아공사관」의 설계변경(안)을 부의 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2019~2021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적 「서울 구 러시아공사관」 망루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회마감 위 페인트 도장을 추가하는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서울 중구청장
- (2) 대상문화재명 : 사적 「서울 구 러시아공사관」(’77.11.22. 지정)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21-18 (정동)
- (3) 세부내용

설계변경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층 이상 벽체 해체 후 재설치</li> <li>- 1층, 2층 내외 벽체 망상균열 및 들뜸부 미장면 해체 후 재설치</li> <li>- 1층, 2층 오염부 청소</li> <li>- 지붕층 바닥 콘크리트 슬래브 해체 후 목재바닥틀로 교체</li> <li>- 3층 창호 해체 후 신재 교체</li> <li>- 1층과 2층 창호 해체 재설치 / 창호 면담기 후 도장마감</li> <li>- 옥상 바닥 및 벽체 방수공사</li> <li>- 동관 선홈통 해체 후 교체</li> <li>- 지붕층 바닥슬래브 해체 시 시스템동바리 보강에 따른 목재계단 해체 설치</li> </ul>
설계변경 후	상동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부 회마감 위 페인트 도장</li> </ul>

- (4) 검토사항 : 페인트 도장을 추가하는 설계변경 신청 내용의 타당성 검토

#### 라. 전문가 현지조사 의견(’23.10.20.): 문화재위원 ○○○·○○○·○○○·○○○·○○○·○○○·○○○, 수리기술위원 ○○○

- 1, 2, 3층 외벽을 페인트로 마감하는 보수방법은 적절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3층 외벽과 1, 2층 외벽색상이 조화를 이루도록 세척 및 표면정리

작업을 진행하기 바람.

- 1층 출입구 하부에 들뜬 부분의 보수와 주변석재 오염부의 세척이 필요함
- 공사 완료 후 보수공사 진행과정에 관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안내하기를 바람
- 해당 문화재 주변 환경정리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 마. 의결사항

- 부결

- 외벽 페인트 마감 보수방법은 부적절

- 출석 7명 / 부결 7명

### 4. 「에비슨 부부 전별첩」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 가. 제안사항

○○○○○ ○○○○○○○ 소장 「에비슨 부부 전별첩」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가치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에비슨 부부 전별첩」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신청('23.4.5.)에 따라 관계 전문가 현지조사('23.9.5.)를 실시하고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하고자 함.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2) 대상문화재

문화재명칭(안)	수량	규격(cm)	제작연대	소유자	소재지
에비슨 부부 전별첩	1건 1점	33×24 (세로×가로)	1935년	○○○○○ ○○	○○○○○○○○

- (3) 검토사항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 (4) 추진경과
  - ('23.4.5.) : 문화재 등록신청(서울시→문화재청)
  - ('23.9.5.) : 문화재 등록 검토 조사

#### 라. 등록조사보고서 의견

- 문화재위원 ○○○('23.9.5.)
  - 「에비슨 부부 전별첩」은 에비슨이 한국에서 활동한 43년간의 업적에 대해 송별연에서 전달된 송별사와 참석자들의 자필 유일본 서명첩임. 그러나 국가등록문화재 「에비슨의 수술 장면 유리건판 필름」이나 에비슨이 하사받은 「고종황제 하사 죽자」가 대한제국기 당시의 역사와 에비슨의 역할을 알 수 있는 유물인데 비해, 「에비슨 부부 전별첩」은 에비슨의 업적을 보여주는 기록물로는 미흡함. 또한 참석한 사람들도 일부가 파악될 뿐이며, 그 참석자의 면면이



## 5. 국가등록문화재 「영덕 영해장터거리 근대역사문화공간」 등록구역 조정 검토

### 가. 제안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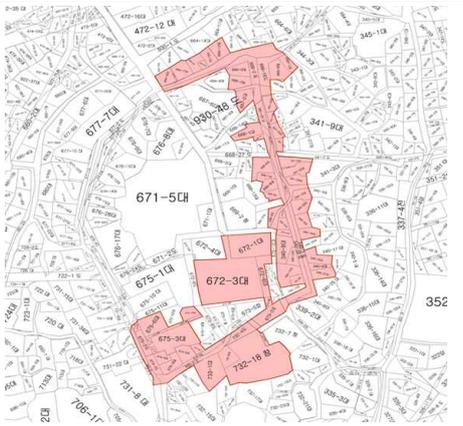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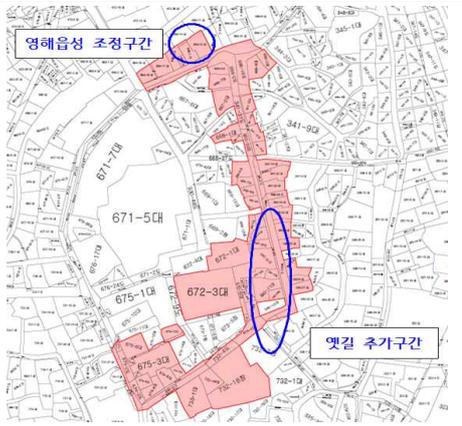
경상북도 영덕군 소재 국가등록문화재 「영덕 영해장터거리 근대역사문화공간」 등록 구역 조정 범위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국가등록문화재 「영덕 영해장터거리 근대역사문화공간」 문화재 등록 구역 조정(안)에 대해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영덕군수
-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등록문화재 「영덕 영해장터거리 근대역사문화공간」 ('19.11.4. 등록)
  - 소재지 : 경상북도 영덕군 영해면 예주2길 10등 (80필지)
  - 소유자 : 영덕군 외
  - 면적 : 17,933.3㎡
- (3) 검토사항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구역 조정
- (4) 세부내용
  -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지적재조사 완료에 따른 옛길과 읍성 일부를 등록구역에 편입
  - 등록면적 및 필지 현황

구분	당초	조정(안)	비고
필지수	80	98	증 18
면적	17,933.3㎡	18,170.2㎡	증 236.9㎡
현황도			-

## 라. 관계전문가 서면검토의견

### ○ 문화재위원 ○○○('23.10.13.)

- 영해 읍성의 흔적으로 664-15대, 664-14대의 필지 일부에 읍성의 축성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어 영해 근대역사문화공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 영해 읍성의 옛길에 대한 흔적이 남아있는 672-11 대, 672-12 대, 672-13임, 672-13 대, 672-14 대, 672-15 대, 672-19 대, 673-9 잡을 포함해서 옛길의 흔적이 잘 남아 있어서 영해 근대역사문화공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 즉, 읍성의 성벽 흔적과 옛길에 대한 흔적이 영해 근대역사문화공간의 공간적 성격을 명확하게 하는데 도움이 됨

### ○ 전 문화재위원 ○○○('23.10.16.)

- 제안된 조정구간은 '영덕 영해장터거리 근대역사문화공간'의 기 등록구역 내에서 '지적정리'와 '옛길 구역 포함'의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근대역사문화공간의 성격을 더 공고히 하는 조치라고 판단됨

### ○ 문화재전문위원 ○○○('23.10.18.)

- 동 건물은 국가등록문화재 등록된 「영덕 영해장터거리 근대역사문화공간」의 등록구역을 조정하는 것으로 공간이 갖는 문화유산으로서의 정체성 및 장소성 확보 등을 위해 새롭게 확인된 옛길과 성벽 일부를 근대역사문화공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바. 의결사항

### ○ 원안가결

- 출석 7명 / 원안가결 7명